

이천시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제정 2011·12·7 조례 제 910호
일부개정 2013·5·6 조례 제 9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5·8·10 조례 제1134호
(제명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천시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청소년·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

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이천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청소년·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내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청소년·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담당국장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5. 청소년상담지원시설
6.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7. 아동·청소년·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이천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10. 지역주민대표
11. 학계전문가
1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 그 밖에 아동·청소년·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청소년·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 제8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은 시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청소년·여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4조(실무사례협의회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실무사례협의회 회원) ①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내지 전문가를 실무사례협의회 회원으로 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운영위원이 겸한다.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청소년·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청소년·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제18조(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청소년·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아동·청소년·여성 긴급개입 구조
2. 기초 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제19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청소년·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제20조(연구 및 교육) 지역연대는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청소년·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확보방안 연구 지원
2. 지역연대 구성원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제4장 회의운영

제21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6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사례협의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청소년·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8·10 조례 제113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